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16
----------	-------

발의연월일 : 2025. 10. 10.

발 의 자 : 한병도 · 박정현 · 송기현
안태준 · 윤건영 · 장철민
김영배 · 천준호 · 강선우
이재강 · 김태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 등의 출납, 보관 등 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은행들 간에 금고로 지정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출연하는 사업협력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반 고객인 국민들에게 그로 인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금고의 지정이나 관리에 관한 기준이 대부분 행정안전부 예규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고 관련 정보들의 공개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금고를 지정하는 심사기준에 있어 중요 심사기준인 예금금리

에 대한 배점비율을 높이고, 협력사업에 대한 배점비율은 제한하며,
금고 예금의 평균잔액과 이자수입 등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38조제2항·제3항 및 제38조의2 신설).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기준으로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금금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금리에 대한 배점비율은 전체 점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배점비율은 전체 점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금고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 예금의 평균잔액과 이자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가 출연한 사업 협력비를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고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고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생략)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 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 할 수 있다.</u>
<u><신 설></u>	<u>③ 제2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 하기 위한 경쟁입찰을 하는 경 우에는 그 심사기준으로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금금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 력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금리에 대한 배점비 율은 전체 점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여야 하고,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배 점비율은 전체 점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
<u>② ~ ④ (생략)</u>	<u>④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4</u>

<u><신 설></u>	항까지와 같음) <u>제38조의2(금고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 예금의 평균잔액과 이자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u>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가 출연한 사업협력비를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